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1가단257166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난 담당변호사 공락준, 이지형, 최대원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10. 5.

판 결 선 고 2022. 11.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① D와 피고 사이의 2019. 3. 6.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취소하고, ② 피고는 D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3. 6. 접수 제172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는 2017. 1. 3. D에게 만기 2020. 1. 3.로 정하여 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채권은 (유)F를 거쳐 2021. 6. 23. 원고에게 양도되었는바, 대여금 연체로 인한 1차 채권양도 무렵인 2019. 11. 17. 현재의 미변제 원리금은 합계 2,847,798원(= 원금 2,628,346원 + 연체이자 219,452원)이고, 2021. 12. 15. 현재의 미변제 원리금은 합계 4,370,668원 상당(= 원금 2,628,346원 + 연체 이자 1,742,322원)이다.

나. 별지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망 G은 2018. 9. 14. 사망하여 D와 피고 및 H, I가 망인을 각 1/4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3. 6. 접수 제17229호로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D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1/4 상속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는바, 이는 일반채권자인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협의분할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분할협의는 “이 사건 부동산을 D를 제외하고 자신을 부양해 온 3인의 자녀에게 양도하되, 그 명의로는 피고 앞으로 한다”는 취지의 망인의 2018. 5. 27.자 유언에 따른 것으로서 분할협의 당시 D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툼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이상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위 분할협의 및 상속등기 당시 일응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분할협의/사망(2018. 9. 14.) 및 상속등기(2019. 3. 6.)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2019. 11. 17.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금은 2,628,346원으로서

당초 대출 시기 및 원금을 고려할 때 위 각 시점 당시의 채무초과 여부를 따지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일 정도로 소액인데다가, 연체이자 역시 219,452원에 불과함에 비추어 위 분할협의 및 상속등기 당시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피고 측에서 명백히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분할협의 및 상속등기 당시 D가 위와 같은 비교적 소액의 대여금조차 변제하지 못할 정도의 재무적 곤란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이 유일한 재산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 증거는 찾기 어려운 점, ③ 망인 사망 이후 D의 채무면탈을 노려 위 분할협의와 상속등기가 이뤄졌다는 것과 같은 특이 상황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비록 형식, 절차상 흠결로 그 법률적 효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지만 이 사건 부동산을 D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만 양도한다는 취지의 망인 작성의 2018. 5. 27.자 유언장(을1호증)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객관적 사해행위성과 D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호춘

[별지]

##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J에 있는 K아파트 L동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28층 아파트

(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J 대 10774.9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8층 M호 철근콘크리트조 59.76㎡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10774.9분의 18.59. 이상.

